

건설공사 발주처(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수준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or (Public Institutions)

문지환*

Ji-Hwan Moon*

Doctor's Cours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Asan,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Ji-Hwan Moon, cgtc4@hanmail.net

ABSTRACT

Purpose: It Was intended to identify problems and derive improvement plans by grasping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mong construction Vork orders. **Method:** By comparing the disaster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compared to the total construction Vork,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level of safety activities of public institutions With a high disaster rate and the results of actual consulting. **Result:**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afety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Vith a high accident rate Vere similarly discovered.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document management systems,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risk assessment activities are operated Vithout reflecting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so improvement in the relevant field is needed. **Conclusion:** Safety-related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formed according to the size of construction orders, and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should be clearly assigned. Since risk assessment is conducted formally to prepare a safety and health ledger, it is necessary to derive risk factor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for the actual construction. It is expected that the level of safety activities can be improved if it is improved by reflecting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s.

Keywords: Construction Order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요약

연구목적: 건설공사 발주처 중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전체 건설공사 대비 공공기관의 재해 현황을 비교하여 재해 발생률이 높은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와 실제 컨설팅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결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재해율이 높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은 유사하게 발굴되었다.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해 조직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건설공사 발주 규모를 고려한 안전 관련 전문인력 및 조직을 구성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해당 공사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위험요인 도출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건설발주공사,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전문인력, 책임과 권한

Received | 3 August, 2023

Revised | 25 August, 2023

Accepted | 29 August, 2023

OPEN ACCES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2018년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자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우리나라의 재해의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3대 프로젝트 대상은 산재사고, 교통사고, 자살사고이다. 중점내용 4가지는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 사망자수 50% 감소, 위험을 유발하는 모든 주체별 역할 재정립(발주자, 원청, 사업주, 근로자), 공공 발주기관 선도모델 정립이 있다. 이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제정하였고 그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안이 추진되었다. 더불어 공공 발주기관 선도모델 정립의 의지에 따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 수립,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과 평가 기준이 제정되었고 공공기관들은 해당 기준에 맞춰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 안전관리 조직이 없던 공공기관은 신규로 조직을 설립하고 전담 안전관리 조직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역할수행을 하지 않던 기관들은 새로이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대상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 및 안전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공공기관 2개소에 대해 구조방정식 형태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건설공사 발주처로서 안전보건 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해보고 안전보건 활동 수준을 향상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론

사고사망 재해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건설업 사망자의 재해 발생 현황은 Table 1과 같으며, 2019년에 비해 2021년 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고 23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해 발생 현황과 비교해보면 7.1% 차지하고 있다.

Table 1. Construction industry disaster occurrence status

구분	합계	2021	2020	2019
건설업 전체	1,635	551	567	517
건설발주공사(공공기관)	116	49	33	34
비율	7.1%	8.9%	5.8%	6.6%

재해 발생 유형으로 분류한 현황은 Table 2과 같으며, 건설업 전체와 건설발주공사 모두 떨어짐 재해 유형의 건수가 가장 높게 발생하고 있다.

Table 2. Construction industry disaster occurrence status

구분	합계	떨어짐	부딪힘	감전	맞음	무너짐	넘어짐	기타
건설업 전체	1,635	749	105	30	98	72	11	570
건설발주공사(공공기관)	116	46	15	5	10	10	2	28
비율	7.1%	6.1%	14.2%	16.7%	10.2%	13.9%	18.2%	4.9%

23개 공공기관의 재해 발생 현황은 Table 3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재해다발 기관 K, V의 안전관리현황을 반영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Table 3. Disaster occurrence status by institution

기관명	합계	2021	2020	2019
기관 A	3	3	0	0
기관 B	1	1	0	0
기관 C	1	0	0	1
기관 D	2	0	0	2
기관 E	1	1	0	0
기관 F	3	1	1	1
기관 G	1	0	1	0
기관 H	1	0	0	1
기관 I	1	0	0	1
기관 J	8	3	3	2
기관 K	18	8	6	4
기관 L	2	0	1	1
기관 M	2	1	1	0
기관 N	5	1	2	2
기관 O	1	0	1	0
기관 P	1	1	0	0
기관 Q	13	5	4	4
기관 R	2	0	1	1
기관 S	3	1	1	1
기관 T	6	1	3	2
기관 U	8	0	3	5
기관 V	20	11	5	4
기관 V	13	11	0	2
총합	116	49	33	3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발주자·도급인으로 확대하였다. 그동안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발주자의 책임에 대해 작성되어있지 않았으나, 2020.1.16.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에서는 발주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조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주자에게 요구하는 안전보건 의무는 Table 4와 같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2019. 3. 28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

Table 4. Oblig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조	내용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건설공사 발주자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혼재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함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 기간 단축할 수 없음 등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불가항력,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설계변경 요청 사유를 명기하고,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의 설계변경 의무
제72조 건설공사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사용기준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건설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받을 의무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	노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6조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 도급인의 설비 또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에 대한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향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도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Implementation of guidelines on safety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조	내용
제6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제7조 인력확충	안전 관련 인력 확보 및 적재적소 배치 노력 등
제8조 전문성 강화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 등
제9조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정기적 안전보건교육 등
제10조 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담조직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 및 운영 등
제13조 안전관리 규정 작성	안전관리 규정 작성
제14조 안전조치	주기적 자체 점검 실시 및 작업장 안전조치 철저히 이행 노력 등
제15조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 등
제17조 작업중지 요청제	근로자가 위험 상황 인지 시 작업 중지 요청 등
제18조 안전투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 및 투자 등
제19조 안전기술 개발 등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 등
제20조 임원의 직무	법령과 본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책무 준수 등
제21조 임원의 책임	임원의 직무 불이행에 따른 해임 등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2019. 4. 30. 제정된 발주자의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의해 강화된 발주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 체계,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 대장 작성 방법, 공사단계별 발주자의 주요 업무를 작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다. 발주자의 건설사업 단계별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안전보건 대장 작성 및 관리기준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Oblig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manual of the ordering party

구분	내용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1. 배경 2.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3.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체계	1. 발주자의 안전보건 활동 체계 구축 2.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 활동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	1.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안전보건대장 3.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단계별 발주자의 주요 업무	1. 사업 전반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2. 사업계획, 설계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3. 공사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업무
부록	1. 기본안전보건대장 예시 2. 설계안전보건대장 예시 3. 공사안전보건대장 예시 4.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2020.1.16. 산업안전보건법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가 강화되면서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 별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 대장의 작성 및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보건 대장의 이행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Table 7과 같이 제정하였다[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2020. 1. 15., 제정].

Table 7. Obligation to notify the preparation of safety and health records, etc. of construction Works

구분	내용
제3조 적용범위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전문가의 지정 등	소속 임직원을 지적하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1.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안전보건대장 3. 공사안전보건대장

조직구성의 문제점

공공기관별 사업 분야에 따라 안전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나, 기관의 사업 규모에 비해 전담 안전관리자의 수가 부족하다. 사내 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화 교육이나 지원 등도 구체적이지 않으며, 외부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

는 있으나 지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 K, V의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발주공사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본사에 전담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본부 등에 기타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본사의 전담 안전관리 조직의 업무를 구분해보면 전사 안전관리 활동을 기획하는 기획부서, 공공기관 안전 평가 대응 및 발주자 안전 의무 이행점검을 운영하여 운영부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부서의 인원들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활동 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여러 법령에서 요구하는 활동들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분담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활동에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Table 8과 같이 고용노동부 주관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한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 기관 K, V의 안전 관리조직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의 안전 전담 조직 인원수 및 안전전문가의 부족함을 알 수 있다.

Table 8. Evaluation index of safety activities of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position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 평가지표	기관 K 평가결과	기관 V 평가결과
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1. 안전 전담조직의 인원수 부족 2. 안전 전담조직의 업무 분담 개선 필요 3. 안전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부족 4. 안전 관련 인력 채용의 지속성 필요	1. 기관의 규모,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한 안전 전문인력 충원 필요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자사, 도급, 발주공사별로 Fig. 1과 같이 매뉴얼·절차서·지침서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규정 및 지침의 적용 범위가 방대하고 관련된 교육 없이 문서만 전달되어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안전보건 업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발주공사 관련된 안전기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의 안전관리 기준을 모른 채 안전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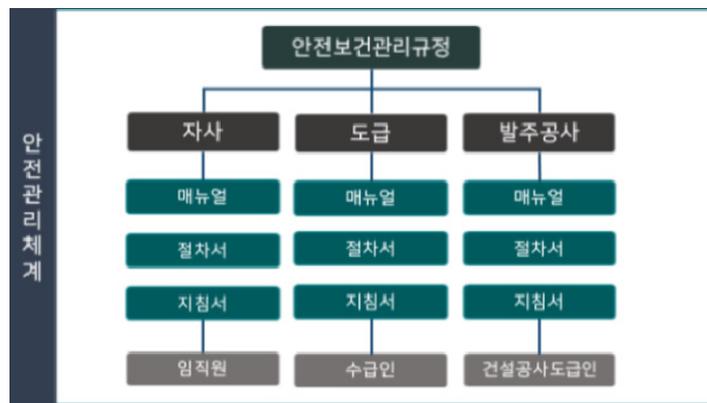


Fig. 1. Document management system

건설발주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의 이행점검은 지역본부의 관리감독자인 공사감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발주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 활동 이행점검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인원은 관리감독자인 공사감독

자이다. 공사감독자는 본사에서 규정한 전사 안전보건 관리 활동 기준에 따라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본사의 안전 전담부서 외의 타 부서에서도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 및 배포하여 공사감독자의 안전관리 활동 시 혼선을 발생시킨다. 본사의 담당부서로 보고된 안전활동 결과는 타 부서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중복된 안전관리 업무로 인해 Table 9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Table 9. Evaluation index of safety activity level of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safety management system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 평가지표	기관 K 평가결과	기관 V 평가결과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1. 같은 유형의 건설공사에 대해 사업단과 지역본부와의 안전관리 수준차이 발생 2. 매뉴얼이 법적 의무사항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실행주체가 구체적이지 않음 3.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구체적이 관리체계 필요 4. 공사부서 및 발주부서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필요 5. 안전전담 부서원의 안전역량 강화 필요	1. 사업소 단위의 안전활동 체계 필요 2. 소규모 공사에 대한 구체적 안전관리 방안 필요 3. 실무부서 안전활동에 지도·조언 할 수 있도록 안전부서의 역량 강화 필요

위험성평가 활동

공공기관은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위험성 평가가 아닌 건설공사 계획수립 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기 위한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 중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표 및 내용을 살펴보면 주체별(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및 시기별(공사계획, 설계, 시공단계) 위험성 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음을 분석할 수 있다.

Table 10. Evaluation index of safety activities of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risk assessment activities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 평가지표	기관 K 평가결과	기관 V 평가결과
건설공사 계획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1. 유해위험요인이 포괄적임 2. 유해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설계과정 반영 어려움 3. 근원적 원인에 대한 감소대책 도출 및 설계조건 제시 필요	1. 유해위험요인의 관리주체가 대부분 시공사 중심 2.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정합성 부족 3. 위험요인의 설계조건 제시 필요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 포괄적인 유해위험요인 도출 2. 외부 전문가의 자문 필요 3. 위험성 높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 미흡	1. 유해위험요인 누락 2. 작업이 없는 유해위험요인 도출 3. 감소대책 미이행 4. 위험요인 안전보건대장 미반영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1. 근원적 원인이 도출되지 않음 2. 추상적인 예방대책 수립 3. 위험성 평가 이행점검 필요 4. 위험성 평가 점검 결과 내용이 단순	1. 시공사의 감소대책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음

결론

사망사고 건수가 높은 공공기관 K와 V에 조직구성, 문서관리체계,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 평가 활동 관점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Table 11, Table 12와 같다.

Table 11. Institution K'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조직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 전담조직의 인원 수 부족 2. 안전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부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 전담조직의 인원 수 증원을 위한 안전전문가 채용 2. 안전전문가 양성을 위한 내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안전관리체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뉴얼이 법적 의무사항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안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필요 2.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 필요 3. 안전전담 부서원의 안전역량 강화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의 사업특성, 조직 구성, 내·외부 이슈 등을 반영하여 책임과 권한, 업무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개정 2. 건설공사 규모별 여건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기준 개정 3. 안전전담부서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교육, 안전활동 결과에 대한 성과측정 및 피드백 조치
위험성평가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위험요인이 포괄적이며 근원적 원인에 대한 감소대책이 도출되지 않음 2. 감소대책이 설계과정 반영 어려움 3. 외부 전문가의 자문 필요 4.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필요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위험요인 도출 시 실제 공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 도출 2.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도출한 유해위험요인을 계획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 후 반영 3. 계획설계 단계에서 설계안전성 검토 시 외부 전문가 참여 4. 시공자의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3개월에 1회씩 이행점검

Table 12. Institution V'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조직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의 규모,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안전 전문인력 충원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의 규모,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한 안전 전문인력 충원 필요
안전관리체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 단위의 안전활동 체계 필요 2. 소규모 공 3. 사에 대한 구체적 안전관리 방안 필요 4. 실무부서 안전활동에 지도·조언 할 수 있도록 안전부서의 역량 강화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사 조직 및 업무기준으로 되어있는 규정,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사내기준을 사업소 업무기준을 반영하여 개정 2. 건설공사 규모별 여건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기준 개정 3. 안전전담부서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교육, 안전활동 결과에 대한 성과측정 및 피드백 조치
위험성평가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 계획수립 시 유해위험요인의 관리주체가 대부분 시공자 중심 2.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되거나 작업이 없는 유해위험요인 도출 3.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 미이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본적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 제거 가능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반영 필요 2. 건설공사 계획수립 시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고 설계자, 시공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누락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 도출해야 함 3. 시공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사업장에 이행하고 발주자는 시공자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기관 K와 V에서 공통으로 도출되는 이슈는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 규모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발주자의 안전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사업 및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전담부서의 인력 증가를 위해 배치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적용해야 하며, 발주자 안전 조직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 안전전담부서 및 지사 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안전전담부서는 순환보직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실무에 투입됨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사전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교육 이수 후 배치가 필요하다. 대표이사 직속의 본사 안전전담부서 외에도 ○○본부별 ○○처에서 안전관리 기준 제정 및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의 혼선을 주고 있다. 안전전담부서와 관련 부서별 안전관리 기준이 중복되거나 이원화되고 있으므로 일원화 관리가 필요하다. 지사 안전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들은 회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안전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기적 또는 상황별로 요청하는 안전 활동에 대한 실적만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리 등급 심사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안전 활동 수준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 활동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이 어렵다. 평가등급을 향상하기 위해 타 기관과 비교할 수 있는 신규 제도를 제정하기에 급급하여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지사에 전달됨으로 신규 제도들의 정착 및 안전보건 활동이 어렵다. 안전보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과에 대한 환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 특성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안전 활동 수준 평가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 외에도 기관의 전체 안전관리 활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안전 활동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Im, J.Y. (2009). A Study of Client's Role for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Master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2] Im, S.J. (2020). Role Analysis of Construction Client i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using Text Mining. Master Thesis, Chungbuk University.
- [3] Jo, N.O. (2020).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and Health Responsibilities of Construction Clients.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4] Kang, S.J. (2021).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Improvement of the Safety and Health Coordin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Project Owners. Master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5] Lee, M.S. (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Public Organizatio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peration on Safety Management Level.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 [6] Oh, S.M. (2019). "A study on the expected effects and vulnerabilities of safety&health shee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Korean Society for Construction Safety, Korea, pp. 45-49.
- [7] Oh, T.K.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of public sector in the construction industries." Korean Society for Safety, Vol. 34, No. 5, pp. 78-86.
- [8] Seo, J.H. (2020). A Study on the Responsibilities of Construction Contractor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 [9] Seol, M.S. (2021). A Study on the Effect and so forth of Public Organization'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ctivities on Safety and Health Performance. Master Thesis, Soongsil University.

- [10] Sin, D.H.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of Public Sector in the Construction Industries. Master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11] So, H.S. (2022). The Effect of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on the Safety and Health Performance. Master Thesis, Soongsil University.
- [12] Song, Y.C. (2023). A Study on the Change of Percep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Officers in Public Institutions by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Master of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 [13] Yoo, D.H. (2022). Effect of Government Safety Enhancement Policies on the Public Nature of Public Institutions.”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